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시행 2015.3.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1호, 2015.1.23,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5-725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2.6.11.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2015.1.23. 개정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제1호 가목"을 "별표 5호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 (제2조)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6.11>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2.6.11>
 -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

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중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중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2.6.11]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중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2.6.11]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중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중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2.6.11]<개정 2012.6.11>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2. "수동식소화기"라 함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동식소화기"라 함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소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5. "대형수동식소화기"라 함은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를 말한다. 6. "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	

	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7. "간이소화용구"라 함은 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2010.12.27. 신설	제3조(정의) 1. ~ 8 (생략) 9. "고체어로졸 자동소화기"라 함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를 말한다. <신설 2010.12.27.>	구획된 공간에 고체어로졸 자동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및 제4조) 제3조제9호를 신설한다.
2012.6.11. 개정 및 신설. 삭제.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1>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2.6.11.>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고체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	(1) 소화기구의 명칭 및 설치장소별 적응성 변경(제3조) 나. 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 호(목) 이동 반영(제3조제1호 ~ 제6호) 1)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 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의 가목과 바목으로 이동, 제3조제7호·제8호·제9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3호마목으로 이동 2) "자동소화장치를 캐비넷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로 분류하여 정의함(제3조제3호의 각 목으로 신설 또는 재분류)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및 "능력단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제3조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1호를 본문 중 ""소화약제"라 함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를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수동식소화기"라 함은"을 ""소화기"란"으로, "것(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

	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중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2.6.11]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중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2.6.11.]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중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중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2.6.11] <개정 2012.6.11.>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7. 삭제 <2012.6.11> 8. 삭제 <2012.6.11> 9. 삭제 <2012.6.11>	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삭 제 8. 삭 제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제5호(중전의 제8호) 중 ""거실"이란 함은"을 ""거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제3조제9호를 삭제한다.
2015.1.23. 개정	제3조(정의) 1 ~ 6 (생략)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별표 1"에 화재의 종류별 소화약제의 적응성을 개정함(제3조제7호부터 제9

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신설 2015.1.23.>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신설 2015.1.23.>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신설 2015.1.23.>	호까지, 별표 1) 제3조에 제7호부터 9호까지를 신설한다.
--	---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6.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 다. <삭제> <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6.11>
 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6.11>
 -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라.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8.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신설 2012.6.11>
-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6.11>
-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6.11>
-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신설 2012.6.11>
-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능력이 있을 것<신설 2012.6.11>
9.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6.11>
-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개정 2012.6.11>
-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른 것<개정 2012.6.11>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 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법 제29조제1항· 소방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영 제18조제1호·영 제19조제1호·영 제20조·영 제21조제1호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예관한규칙 1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	

	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에 있어서는 20미터,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0미터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알칼리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영 별표 2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건조사·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양동이", 건조사에 있어서는 "건조사",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 1301을 제외한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는 지하층 및 무창층과 거실 또는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	
1984.8.16.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법 제29조제1항·영 제17조제1호·영 제18조제1호·영 제19조제1호·영 제20조·영 제21조제1호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2조제1항중 "소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1989.4.1.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 6 (생략)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2항 "소화기"는 "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로 하며 "과거실"을 "또는 밀폐된 거실"로 하고, 일부단서 "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소방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8.16., 1993.11.11.> 1. (생략)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 4 (생략) 5.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알칼리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영 별표 3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식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1항본문중 "제16조제1항·법 제29조제1항·영 제17조제1호·영 제18조제1호·영 제19조제1호·영 제20조·영 제21조제1호 및 영 제22조"를 "제17조제1항·법 제30조제1항 및 소방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중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규격및검정예관한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을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 소화용구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동항제5호단서중 "영 별표 2"를 "영 별표 3"으로, "건조사"를 "마른모래"로 하고, 동항제6호중 "소화기는"을 "소화기구(자동확산식소화용구를 제외한다)"으로, 물양동이에 있어서는 "소화양동이", "건조사에 있어서는 "건조사"를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할로겐화물"을 "할로겐화합물"로 한다.
1995.5.27.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생략)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생략) 4.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의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따라 이들 지하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소화·경보설비 및 위험물시설에 관한 기준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소방법시행령의 개정(1994.7.20. 대통령령 제14,334호)으로 아파트 11층이상의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용구)를 추가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파트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미터,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미터이 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알칼리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영 별표 3의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식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어서 복도형아파트의 경우는 방호구역을 1개층이하에서 2개층이하로,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간격은 2.3미터에서 3.2미터로 각각 완화함(제2조제6항제7호). 제2조제1항제2호중 "소화기"를 "수동식소화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소화기구"를 "수동식소화기"로, "소화기구까지의"를 "수동식소화기까지의"로, "소형소화기에"를 "소형수동식소화기에"로, "대형소화기에"를 "대형수동식소화기에"로 하며, 동항제5호 본문중 "소화기구를"를 "수동식소화기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소화기에"를 "수동식소화기에"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할 것 제2조제2항 본문중 "소화기"를 "소화기구"로 한다.
1998.5.12.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생략)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 6 (생략)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	제2조제1항제2호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한다)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 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생략)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정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1999.12.31.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 6 (생략) 7. (생략) 가. ~ 나 (생략)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 마 (생략) ② (생략)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중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의 설치거리를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미터이내에서 2미터이내로 완화함(제2조제1항제7호 다목).
2001.7.27.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 3 (생략) 4.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20미터,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미터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 7 (생략) ② (생략)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출입구 등에 한하여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 개폐장치외에 압력스위치 등도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제2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002.4.12. 개정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1. ~ 3 (생략)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를 구획된 각 거실마다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동식소화기를 감소(減少)할 수 없는 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추가하여 그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4호나목).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 마 (생략) ② (생략)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개정 및 신설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문 개정 제4조1항7조신설한다.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8. 개정	제4조(설치기준) ① (생략) 1. ~ 3 (생략) 4. (생략) 가. ~ 나. (생략)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4조제1항제8조 "투척용소화기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량(별표3 소방대상물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능력단위를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 7 (생략) 8. 투척용소화기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량(별표3 소방대상물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능력단위를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것.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15. 개정	제4조(설치기준) ① (생략) 1. ~ 3 (생략) 4. 소화기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②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자동식소화기의 약제방출구 설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정소화약제 소화기의 설치장소 범위를 완화하여 설치기준과 방법을 제시 함
2010.12.27. 개정 및 신설	제4조(설치기준) ① (생략) 1. ~ 5 (개정)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애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개정 2010.12.27> 8. (생략) 9. 고체애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하고, 자가발전작동장치 및 열감지선은	제4조제1항제6호 중 "(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애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한다.

2012.6.11.
개정

방호구역 내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할 것
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라.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② (생략)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6.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다. <삭제> <2008.12.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에 의한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소화약제 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그 밖의 것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불활가스 소화약제	정소화약제	인산염소화약제	중산염소화약제	알루미늄산화약제	강화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고체머뮬 혼합물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	○	○	○	○	-
전기설 및 전선설	○	○	○	○	-	-	-	-	○	-
통신기기설	○	○	○	-	-	-	-	-	○	-
특수 가연물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	○	○	○	○	○	○	○
	가연성액체류	○	○	○	○	○	○	○	○	○
	그 밖의 것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 조제1항 제3호 관련)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6.11>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6.11>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라.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1.>

가. ~ 나 (생략)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6.11.>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1.>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6.11.>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주발용자동소화장치 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마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형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안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머반 또는 분전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장치 를 바닥면적 10㎡ 미하는 1개, 10㎡ 초과하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머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머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식·분말식·고체메어로폴식 자동소화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전실·변전실·송전·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키기실·전선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용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출능력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메어로폴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다만, 통신기기실·전선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출능력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메어로폴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4. 소방기문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소방기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소방기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환선류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업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호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주발용자동소화장치 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kg 미만은 제외한다)

수 있다. <신설 2012.6.11.>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6.11.>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6.11.>

9. 가스식, 분말식, 고체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개정 2012.6.11.>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
 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
 로 본다. <개정 2012.6.11.>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
 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
 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
 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른 것 <개정 2012.6.11.>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
 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은 1개월 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kg 이상 300kg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300kg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법률(령 별표 4)과 일치하도록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함(제4조제7호·제8호·제9호)

라.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제1조 ~ 제6조, 별표1 ~ 별표4)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별표 4의 규정”을 “별표 4”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소화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소화기는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를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로, "이를 제외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는"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로, "수동식소화기"를 "소화기"로,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을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으로, "게시"를 "부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세대별로"를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별"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할 것."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을 "형식승인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를 "가스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를 "탐지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를 "수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신설한다. 제4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을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4조 제2항 본문 중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로 한다.
--	--	--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11>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목개정 2012.6.11.>

년도(개정)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82.9.15.	제3조 (소화기구의 감소) ①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3분의 2(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84.8.16. 개정	제3조 (소화기구의 감소) ①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3분의 2(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로 한다.
년도(개정)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 이유
1993.11.11. 개정	제3조 (소화기구의 감소) ①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	제3조제1항본문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방대상물의 11층이상의"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으로 하며,

	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3분의 2(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16., 1993.11.11.> ②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1.11.>	동조제2항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로,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로 한다.
1995.5.27. 개정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개정 1995.5.27.>) ①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②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1.11., 1995.5.27.>	전력·통신사업용 지하구의 화재안전대책추진에 따라 이들 지하구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소화·경보설비 및 위험물시설에 관한 기준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제3조의 제목 "소화기구의 감소"를 "수동식소화기의 감소"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 "소화기구를"을 "수동식소화기를"로, "대형소화기를"을 "대형수동식소화기를"로, "소화기구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을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형소화기를"을 각각 "대형수동식소화기를"로 한다.
2001.7.27. 개정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개정 1995.5.27.>) ①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②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제3조제1항 본문중 "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동력소방펌프설비"를 "분말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로 한다.

	수 있다. <개정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4.12. 개정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개정 1995.5.27.>) ①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종교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2002.4.12.> ② (생략)	제3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종교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개정	제5조(수동식소화기의 감소) ①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조 변경
2012.6.11. 개정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제5조의 제목을 “(수동식소화기의 감소)”를 “(소화기의 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대형수동식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동식소화기의 3분의 2(대형수동식소화기”를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로 하며,

	(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목개정 2012.6.11.>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을 “다만,”으로,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수동식소화기”를 각각 “대형소화기”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설비”를 “해당 설비”로 한다.
--	--	--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4.6.4.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2.6.11. 개정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6조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년도(개정)	화재안전기준	개정 이유
2009.8.2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2010.12.27. 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개정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제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5년 6월 10일"로 한다.
2015.1.23. 개정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6월 10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2015-21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 자료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이전 연혁법령인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1982.9.15.)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93.11.11.)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매품>